

건설소식

설계변경 등으로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시 적격심사때 정해진 금액비율 지켜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하도급공종이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하도급 변경계약을 할 때에도 적격심사 당시 정해진 하수급 금액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협회가 50억원 이상 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 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토록 한 ‘국가계약법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규칙 별표2’와 관련해 제출한 ‘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 이행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협회는 질의를 통해 “국가공사 발주시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도급금액비율(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하도급할 공사 금액) 내용대로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착공이후 설계변경 및 ESC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을 받은 경우에도 하도급변경 계약시 당초 정해진 하도급금액 비율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물었다.

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

건’ 제53조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며 “하도급공종이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하도급 변경계약을 할 때에도 당초 정해진 하수급금액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품 물가조정제도 5월부터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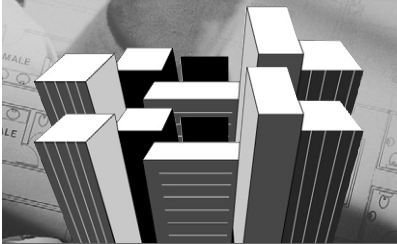
가격 15%이상 변동시 적용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계약을 맺었다가 특정 자재가격이 급등, 시공업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해당 품목만 계약금액을 올려주는 제도가 지난 5월부터 시행됐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공사에서 특정 규격 자재(단품)가 입찰 당시에 비해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해당 품목에 대해 가격변동률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해주는 단품 물가조정(ES) 제도 시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단품 물가조정을 한 뒤 다시 총액 물가조정을 하게 될 경우 총 물가상승률 산정시 단품 가격상승률은 공제하고 단품 조정기준일 이후 총액 물가조정기준일까지의 단품 가격상승분은 합산해서 총 물가상승률이 3% 이상 되는 시점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



CONSTRUCTIONNEWS

한 철근이나 H형강 등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업자들은 경영부담이 대폭 덜어질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다.

대형건설사 불공정하도급 일삼다 공정위에 적발

미분양 떠넘기고 수입차 강매도

하도급업체에 미분양아파트를 배정해 분양하고 그것도 모자라 수입자동차를 할당해 판매토록 한 대형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 하도급을 한 ○○건설과 ××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1천300만원, 5억9천600만원을 각각 부과기로 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에서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제12조 2항)을 적용해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은 미분양아파트 69세대를 39개 하도급업체에 배정, 분양하고 10개월간 분양권 전매도 금지, 아파트 분양의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겼다.

○○건설은 특히 미분양아파트 외에도 대표이사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

체가 판매하는 모 수입자동차 6대도 하도급업체에 할당, 판매해 친인척 운영업체의 매출을 높이는 부당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은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20개 하도급업체에 미분양아파트 49세대를 배정해 분양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아파트 분양을 하도급업체에 전가, 하도급업체가 이를 떠안거나 분양가보다 할인해 전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만든 것이며, 따라서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불공정하도급 거래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들 업체가 미분양아파트나 수입차를 하도급대금으로 대신 지급한 것은 아니며, 하도급대금은 정상 지급하고 다만 계약서에 명기하는 방식으로 거래의 조건을 불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하도급거래에서 직접적인 대금결제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부당 이익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계속고용 지원금 신설

건설근로자들의 계속고용지원금이 신설되고 인력재배치 고

용유지지원금·전직지원 장려금이 인상된다.

노동부는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신설하고 사업전환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련했다.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은 계절적 영향으로 고용불안을 겪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로써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사업주가 동절기, 우수기에 날씨로 인한 공사 중지 기간 중에 건설근로자를 계속고용하면서 금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액의 2/3(일일 35,000원 한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전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전직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전환에 따른 인력재배치 고용유지지원금과 전직지원 장려금의 지급수준이 인상된다.

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고 기존 근로자의 60% 이상을 전환된 사업에 재배치할 경우 최대 1년간 지원되는 인력재배치 지원금의 지급수준이 지급임금의 2/3(대기업은 1/2)에서 3/4(대기업 2/3)으로 인상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기업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되는 전직지원 장려금도 중소기업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비비용의 3/4을 지원하던 것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인력재배치 고용유지지원금과 전

직지원 장려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향후 FTA로 인한 무역조정 피해기업 등이 사업전환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작년 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육아휴직에 갈음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신설(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이를 부여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도 신설기로 했다.

표준품셈 수시 개정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리규정 개정

표준품셈 관리규정이 개정돼 매년초 개정, 발표하던 표준품셈이 필요할 경우 일년에 몇 번이라도 개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표준품셈을 관리하기 위한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규정에 따르면 품셈의 확정은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공사비산정기준심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적용토록 함으로써 종전의 "다음 년도에 적용할 표준품셈을 매년 12월까지 확정 하여야 한

다"는 규정의 시기와 횟수 제한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이 품셈 제정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세울 때 연간 품셈제정 횟수를 반영하거나 기타사항으로 현장실사 등이 부진한 품의 경우 추가 제정할 수 있게 하면 그 횟수만큼 새로운 품셈을 제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산정기관에서 어떻게 품셈 제정에 관한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 당해연도 품셈 제정 횟수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의 관계자는 "당초 규정은 연간 2회에 걸쳐 품셈을 제정, 1월과 7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입안했으나 국토부에서 품셈의 확정시기를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올해 소규모 콘크리트포장 등과 같이 현실과 차이를 보였던 일부품셈의 개정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계약금액 조정신청 폭주, 조달청 인력부족 처리 정체

올 들어 1,190건, 한 달 이상 걸리기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시설공사 계약금액을 증액해달라는 건설사들의 요구가 폭주하고 있다.

단기간에 신청이 집중됨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향후 인력을 보강하고 조직을 개편해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올 들어 건설사들이 조달청에 신청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스칼레이션) 건수가 1,19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처리한 계약금액 조정건수가 1,348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연간 신청건수에 육박하는 물량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집중 요청된 셈이다.

최근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모두 총액 조정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단품슬라이딩제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아직 한 건도 신청되지 않았다.

향후 건설사들이 철근 등 단품가격 상승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까지 신청하고 나서는 현재의 급증세가 더욱 가속될 상황이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계약금액 증액 요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최근의 원자재가격을 비롯해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증액의 경우 건설사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이나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올랐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또 천재지변이나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면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 증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3% 이상의 물가변동요인이 발생하려면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 걸렸으나 최근 물가가 급상승하면서 증액요인 발생주기가 빨라졌다”며 “신청건수가 늘어나다 보니 계약금액 조정신청 이후 한달이 지나도 증액이 완료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건설사가 이를 신청한 이후 10일 안에 완료하도록 돼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들어 조달청에 신청된 1,190건 가운데 절반수준인 605건만 현재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됐다.

이에 대해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서류보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류보완 기간을 제외한 실제 처리기간은 10일 이내”라고 해명했다.

또 건설사들의 요구를 반영,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을 완료하기 위해 현재 계약직 공개 채용 공고를 내고 인원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약 15명의 인원이 총사업비 검토와 계약금액 조정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담당업무 폭

주에 따라 충원을 추진했으나 최근의 정부조직 축소 기조와 정규직 인원 한도에 가로막히면서 계약직으로 인원 충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원이 충원되는 대로 담당부서인 국책사업과를 1팀과 2팀으로 나눠 운영하는 등 업무수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업무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인원 충원과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정기간을 현행 90일에서 40~6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쓰레기소각장 에너지원 각광

남은 열 활용 연간 4000억 절감

대형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이 새로운 에너지자원 회수시설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확대와 함께 여열, 고형연료의 에너지화도 가속화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43개 대형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여열을 난방열 공급 및 전력생산 등에 활용한 결과 연간 317억원의 판매수입과 4,010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발생한 총 644만Gcal의 여열 가운데 91.8%인 591만Gcal가 회수·이용됐다”며 “이를 통해 난방과 전력생산에 활용하고, 고열회수에 따른 대기온도 상승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원유로 환산하면 63만8,000kℓ에 이르며 이는 연간 4,101억원의 원유 수입 절감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화석에너지 사용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CO₂ 기준) 감축량은 180만톤 정도이며, 탄소배출권으로 환산 때 305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소각시설에서 회수·이용된 여열 591만Gcal 중 448만Gcal(75.8%)는 지역난방공사 등에 열을 공급해 301억원의 판매수익을 냈으며, 자체난방, 건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의 열원 등으로 사용해 연간 1,384억원의 난방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각 지자체 소각시설의 여열 회수·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여열공급처 확대,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 소각시설 때 적정한 여

열 회수·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여열 자원화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개·보수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11년까지 5%(2006년 2.24%)로 높이기 위해 소각여열 활용과 고품연료(RDF) 전용 발전소 건설 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통합정보시스템 가동

공정위, 불공정 거래 사전 추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를 사전에 추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해 건설관련 모든 업체와 부처의 정보를 한데 모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통합정보시스템(USIS : Unfair Sub contact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용역을 통해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말까지 완료해 12월 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및 사전전화 이후 처리시스템은 물론 국토해양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설관련 유관기관의 하도급 신고 및 상담센터

내부 시스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정보를 하나로 묶는 것으로 공정위 내부 업무에 활용하고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업체 대상을 사전에 추출하여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따른 사후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주부터 3년 동안 3회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습 법 위반 업체 18개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직권조사를 마치고 내부 심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업체를 가려낼 방침”이라며 “조사대상에는 일부 건설업체도 들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부당 납품단가 인하 협의가 높은 업체는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있지만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런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안문 통과해야 공사장 들어간다

건설현장 출입통제시스템 도입 확산

건설현장은 지나칠 정도로 개방적이다.

특히 대형 현장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협력업체 근로자 수백여 명이

드나드는 데다 직접 공사와 관련 없는 기관·단체·조합 관계자와 상인들, 또 지역주민들의 출입도 잦은 형편이다.

결국 취약한 보안구조 및 관리 효율성, 민원인들의 무단 침입으로 인한 공사 중단 및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현장관리자들은 늘 골치를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출입구 몇 곳에 ‘공사장 출입통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설현장이 나타나고 있어 시선을 끈다.

예를 들어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D건설의 주상복합빌딩 건축현장을 들어 회전형 보안게이트 시스템을 설치해 근로자들의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전철역 출입구와 비슷한 형태의 회전형 보안게이트를 특수 컨테이너 구조물 안에 설치한 뒤 생체인식 단말기와 폐쇄회로 TV, 운영프로그램 등을 부착한 방식이다.

현장관리자들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미리 발급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생체인식 단말기에서 손등 혈관구조를 확인받고 몇 초 만에 쉽게 출입구를 통과할 수 있다.

30층짜리 고층빌딩 3동을 짓는 이 현장은 하루 최대 800여 명의 근로자가 투입될 예정인데 출입구마다 3대의 보안게이트를 설치한 이래 하도급 협력업체 인력·정보관리와 민원인 처리에서 적지 않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일단 공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 상인이나 수많은 유형의 방문객·민원인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공사차량과 근로자들의 출입구를 따로 구분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K건설 주상복합빌딩, 대구 시내에서 최근 착공된 S건설 아파트공사현장에도 을지로 D사 현장과 똑같은 회전형 보안게이트가 설치될 예정이다.

청계천 K현장과 대구 S현장도 모두 도심지 내에서 대형 건축공사가 진행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새 보안시스템은 민원인 관리 및 근로자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크고 주변환경이 복잡하며 수백여 명의 근로자가 출입하는 도심지 내 대형 건축현장을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정보 누출의 우려도 거의 없어 보인다.

소속회사와 이름 정도만 파악되는 데다 어차피 현장출입 횟수도 많아야 하루 2~3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협력업체들이 제출하는 근로자 투입정보와 실제 근로자 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 불필요한 지급비용이 늘어나는 일을 막는 효과까지 기대된다.

건설현장의 한 관리자는 “보안게이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비용 문제와 준공 뒤 장비의 처치곤란 문제로 막상 도입하기가 어려웠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렌털 방식으로 도입해

사용한 뒤 반납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70~300억 공사, 하도급계획 제출해야

인천시 지역사 참여 활성화시책 확정

앞으로 인천지역에서 발주되는 70억 이상 300억 미만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하도급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또 발주자와 낙찰자가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도급 업무에 관한 협의가 의무화 된다.

인천시는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이 인천지역에서 발주하는 70억~300억원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서류를 제출할 때 하도급계획서도 함께 내도록 했다.

또 계약 체결에 앞서 발주자와 낙찰자가 하도급에 관한 업무협의를 하도록 결정했다.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은 최대 50%로 높이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30억~70억원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때 발주기관장과 시공업체가 공동협약을 통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해 현재 지역업체가 참여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PF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지역업체 시공지분 참여비중 및 하도급 관리계획서 평가 등을 통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협상자를 가리기 위한 평가 때 지역업체가 일정 지분 이상을 참여하거나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이 높은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편 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건설업 등록·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키로 했으며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 해외 건설시장 정보 수집과 프로젝트 발굴사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대형사업 선승인, 후절차 도입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선

앞으로 미군기지 반환지역 개발 등에 선승인, 후 법절차 이행 방식이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와 함께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도 개선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불편법령 27건의 폐쇄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특히 법제처는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던 인허가 절차도 크게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장설립·건축허가절차 동시에

법제처의 이번 법령 개정안은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과 기업 및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령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개선안을 담고 있다.

특히 법제처는 현재까지 발굴한 550건 중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27건(유사 법령 일괄 개정 포함 시 82건)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선 승인 후 절차 이행 도입

파주시의 '선 사업승인, 후 법적절차 이행' 방식이 인·허가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등을 개정, 선 사업승인의 요건으로 공익 사업을 시행키 위해 긴급히 필요하거나 사실상 인·허가 등 의제 관련 협의가 이루어져 형식적 절차만 남은 경우 사업승인을 먼저 내줄 수 있도록 요건을 일반화 할 예정이다.

실제 법제처는 반환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 공장신설, 외국인 투자유

치, 학교 이전 등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된 인·허가 등에 관한 의제조항이 있어도 협의기간이 길고 이로 인해 지가 상승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행정부는 빠른시일 내에 개정계획을 마련,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공장설립과 건축허가 절차의 통합도 추진된다.

현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 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동시에 진행토록 하는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면서 건축허가를 별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법제처는 공장설립 승인 때 건축허가 의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간략설계도 등 간소화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설립과 건축허가 절차가 실질적으로 통합·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개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의 개선이 골자다.

이는 건설업과 관련 없는 다른 형사처벌도 포함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규정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부정수표 단속법' 등 위반행위자와 건설업 영위과정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자로 제한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회의원 임기 만료에 따라 이 법률이 폐기되면 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접대비 범위 확대

접대비는 법인세 산정기준의 하나이지만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접대비 범위를 인정하면서 불필요한 혼선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접대비 관련 규정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제처는 지적했다.

현행 법인세상 접대비는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등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접대비에 포함되는 사례와 포함되지 않는 사례로 나눠 접대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경영활동에 활력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대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접대비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경조금,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비 등을 예시했다.

공장입지규제 개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훈령을 통해 개별 공장의 입지선정 기준을 정하면서 수질오염 등 환경보호를 이유로 사실상 공장설립을 금지하는 규제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취수장의 유하거리(하천 등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켄 거리, 상류 15Km, 하류 1Km) 이내 지역과 농업용 저수지의 유하거리(상류 5Km,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2Km) 이내 지역에서 공장입지 금지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필요시 법령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한만 두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경우 발생된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하고 유출차단·집수시설을 설치하면 공장입지 거리를 취수장 상류 7Km로 완화하는 등 상수원 상류의 입지규제를 연내에 개선키로 했다.

수도권 공장총량 산정기준 개선

현재 정부는 수도권에서 공장의 무분별한 신설을 억제키 위해 지역별·연도별 공장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새로 지을 공장의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산정하고 이 총량을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과 증축을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공장총량을 산정할 때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경우에도 철거대상 면적과 새 공장의 면적을 합산하면서 기존의 노후한 공장을 철거치 않으면 새로운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철거될 기존 공장면적은 집행량에서 제외해 순증가분에 대해서만 공장총량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기존 공장 철거는 새 공장 사용승인 때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대상 공장의 규모를 기존 2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하고, 인구집중 유발시설에서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공장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오염물질 총량규제와 관련해 권역별 허용 가능한 개발사업량을 공시, 비점오염원 감축을 위해 시설 투자를 할 경우 탄력적으로 개발사업을 허가토록했다.

중소기업의 공장설립과 관련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수도권 공장총량 적용대상을 완화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고 총량관리의 실효성이 없

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을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할 때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주택채권 중복 매입 면제

현재 종합건설업체가 추가로 종합건설업종을 등록할 때는 자본금의 증액분만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종을 추가등록하는 경우, 자본금의 증액분만 매입해도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업계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의견을 따른 것이다.

현재 주택법에서는 건설업 등록 때 자본금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대부분 시·도에서 현재 자본금 기준으로 종전에 매입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현재 법령상 증액된 자본금만큼 채권을 매입해도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달리 판단도리 여지가 있어 이를 상반기에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명문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